

1-2 전략기술 네트워크

1. 사업개요

□ 사업목적

- 연구개발특구 내 전략기술, 글로벌 등 기술산업화 관련 산·학·연·관 혁신주체 간 기술교류·협력의 기회제공으로 다양한 분야의 협력 의제 발굴 등 특구성장 추진

□ 사업내용

- 지속적인 전북특구 발전을 위한 특화분야, 전략기술분야, 연구 인프라, 산업역량, 기술산업화 성과분석 등을 통한 공동 연계·협력 분야 도출 및 발굴 지원 등
- 공공기술 산업화관련 산·학·연·관 혁신주체가 모두 참여하는 네트워크, 포럼, 워크숍 운영을 통한 공동 발전방향 의견 수렴 및 협력체계 구축 등
- 국내외 기술핵심기관의 네트워크, 인프라 등을 활용하여 기술연계·융합, 이업종간 교류, 상호 공백영역 지원을 할 수 있는 리딩그룹 중심 협력 플랫폼 마련

2. 지원내용

□ 2025년 예산규모 : 총 200백만원(1개 컨소시엄 설정)

- 총 사업기간 : 협약일로부터 12개월 이내

□ 신청자격 : 네트워크 기획·운영 실적이 있는 법인 또는 기관 및 기술사업화 전문기관 등

□ 지원내용 : 혁신주체간 교류·협력관련 네트워킹, 전문가 활용 등 제반비용 지원

<추진내용(예시)>

- (네트워크) 전략기술·특화분야별, 산업화 유사분야별(기업지원, 글로벌, 투자 등) 교류·협력할 수 있는 협의체를 구성하고, 정례적 네트워크 조성
- (교류협력 지원) 특화분야(아이템)별 초광역(타 특구), 글로벌(미국, 유럽 타겟) 연계 앵커기업 및 연구 기관 교류 협력 지원 등
- (포럼/워크숍) 성과공유회, 전략기술·딥테크 기술혁신 포럼 등 기술교류 및 성과확산, 홍보지원 등

- 특구재단 미션 및 역할과 관련하여 재단이 요청하는 제반사항 등

□ 정부지원연구개발비 및 기관부담연구개발비 현금비율 : 전액(100%) 정부지원연구 개발비 지원

□ 연구개발성과로 인한 수익의 납부 : 해당없음

□ 연구장비 관리에 관한 사항 : 연구장비 계상 불가

□ 연구개발과제수의 제한 : 본 사업은 관련법령 및 규정에 따른 '동시수행과제수 제한' 과제에 해당함

- 연구자가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연구개발과제 수를 본 공고에서 지원하는 과제를 포함하여 최대 5개로, 그 중 연구책임자로서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연구개발과제 수를 최대 3개로 제한함

※ 단, 관련법령 및 규정 등에 따라 동시수행과제수 산정에서 제외되는 과제는 동시수행과제수 제한 대상에 포함하지 않음

- 과제 신청기관은 본 공고 지원과제 신청 시 동시수행과제수 제한을 위배한 상황에서 신청할 수 없으며, 향후 과제선정에 따라 연구자가 동시에 수행과제수 제한을 초과하게 되는 경우, 즉시 그 사실을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에 통지하여 연구책임자 변경 등 조치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해야 함

- 과제 신청기관이 동시수행과제수를 초과하여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하고 있음에도 그 사실을 통지하지 않고, 사후 적발될 경우, 사안에 따라 관련법령 및 규정에 근거한 조치가 이루어 질 수 있음

< 관련법령 및 규정 >

- 국가연구개발혁신법 : 제31조(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부정행위의 금지), 제32조(부정행위 등에 대한 제재처분), 제35조(연구개발과제의 성실 수행), 시행령 제64조(연구개발과제 수의 제한)
- 국가연구개발사업 동시수행 연구개발과제 수 제한 기준(과기정통부 고시)
- '24년 국가연구개발사업 동시수행 연구개발과제 수 적용제외 과제(안)(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제55회 운영위원회 심의, 2023.12.7.)

3. 추진체계 및 추진절차

□ 사업 추진체계



□ 추진절차



※ 상기 일정과 방법 등은 변경될 수 있으며, 선정평가 방법 및 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경우 1회에 한하여 이의신청할 수 있음

4. 평가기준 및 유의사항

□ 평가기준

평가항목	세부항목	비중(%)
수행기관 역량	• 사업(특구 및 특화기술)에 대한 이해도	30
	• 연구책임자 및 기관의 사업 추진 역량	
추진계획의 타당성	• 사업 수행 목표의 도전성 및 혁신성	50
	• 추진전략의 적정성 및 추진계획의 구체성	
	• 사업 추진 체계의 명확성 및 추진방법의 창의성	
활용가능성 및 파급효과	• 사업수행 성과의 활용 가능성	20
	• 사업 수행에 따른 사회적, 경제적, 지역적 파급효과	
계		100

* 평가 항목 내 세부평가 항목기준은 평가/심의과정에서 일부 조정될 수 있음

□ 평가방법

- 신규과제 선정평가는 평가 계획에 의거하여 서면검토 및 발표평가, 발표평가, 현장방문평가, 토론평가, 비대면평가 등의 형태로 운영할 수 있음
- 연구개발계획서의 발표는 연구책임자가 하는 것이 원칙임
- 신청과제의 평가를 통해 종합평점이 60점 이상인 과제는 '지원가능과제', 종합평점이 60점 미만인 과제는 '지원제외'로 분류함
- '지원 가능 과제'로 분류된 경우라도 예산 범위가 초과한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
- 최우선 순위 과제가 협약 전 선정제외 또는 협약체결을 포기하였을 경우, 예산 범위 내에서 '지원가능과제' 중 차순위 과제가 순차적으로 지원대상과제로 선정될 수 있음
- 선정된 과제의 연구개발비 및 연구개발기간은 평가결과에 따라 조정될 수 있으며, 과제 추진 중 관련규정에 따라 단계·특별평가 등을 통해 과제가 중단되거나 연구개발비가 조정될 수 있음

* 관련 규정 :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12조(연구개발과제의 수행 및 관리) 제3항 및 제15조 (특별평가를 통한 연구개발과제의 변경 및 중단)

- 과제신청 접수결과 경쟁률(선정예정기관 수 대비 신청기관 수)이 1:1 이하의 단독 · 미응모의 경우, 사업에 대해 2주 공고 연장 실시
 - 연장 공고 후에도 경쟁률이 1:1일 경우는 지원가능 평가접수 기준을 60점 이상에서 75점 이상으로 상향하여 절대평가로 추진하며, 미응모의 경우는 재기획 후 공고 추진

□ 우대사항: 해당 없음

□ 선정평가 시 감점사항 : 최종접수 산출 시 감점기준에 따라 총점에서 차감

- 최근 3년 이내(접수마감일 기준) 부정행위로 판단되어 협약해약 및 제재처분 된 연구책임자나 기관(주관연구개발기관, 공동연구개발기관, 위탁연구개발기관 등)이 새로운 과제를 신청하는 경우(1점)

- 최근 3년 이내(접수마감일 기준) 연구개발과제 선정 후 또는 연구수행 도중 정당한 사유 없이 협약을 포기한 경력이 있는 연구책임자나 기관(주관연구개발기관, 공동 연구개발기관, 위탁연구개발기관 등)이 새로운 과제를 신청하는 경우(1점)

□ 신청자격 검토사항 및 사전지원제외 대상 : '연구개발특구육성사업 운영관리지침'의 제14조에서 제한하는 대상은 지원제외 대상으로 함

부실위험 확인 관련 제출증빙 서류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■ 21년도~'23년도 결산 표준재무제표(국세청(홈텍스)발급) 또는 회계감사보고서 * 접수마감일 기준 '24년도 결산 미완료에 따라 신고된 전전년도(23년도)까지 재무제표를 근거로 판단
--------------------	--

* 단, 한국채택 국제회계기준(K-IFRS)을 적용함에 따라 부채비율 · 유동비율에 문제가 발생하거나, 자본전액잠식이 발생한 경우에는 일반기업회계기준(K-GAAP)을 적용하여 부채비율, 유동비율, 자본전액잠식 여부 판단 가능. 이 경우, 연구개발기관은 부채비율 및 유동비율 등 판단을 위해 추가적인 회계기준에 따른 자료를 전문기관에 제출해야 하며, 한국채택 국제회계기준과 일반기업회계기준을 혼용할 수 없음

* 선정평가 이후 '연구개발특구육성사업 운영관리지침'의 제14조에서 제한하는 대상에 해당되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, 해당과제의 선정 취소 또는 협약을 해약할 수 있음

□ 근거 법령 및 관련 규정

근거법령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국가연구개발혁신법, 동법 시행령 및 관련 행정규칙*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*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,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노트 지침, 국가연구 개발사업 동시수행 연구개발과제 수 제한기준, 국가연구개발정보처리기준 등 ○ 과학기술기본법,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및 하위법령, 시행규칙 ○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,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○ 국가연구개발 시설·장비의 관리 등에 관한 표준지침
관련규정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 ○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연구개발특구육성사업 운영관리지침

5. 신청방법 및 절차

- 사업공고
 - 과학기술정보통신부(www.mst.go.kr)
 -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(<https://www.ntis.go.kr>)
 - 연구개발특구포털(www.innopolis.or.kr)
- 신청방법: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(www.iris.go.kr)을 통한 온라인 접수
- 접수기간 : '25. 2. 3.(월) ~ '25. 2. 18.(화), 15:00까지(IRIS 시스템 시간 기준)

제출서류 : 제출 서류는 원본을 스캔하여 전자파일(PDF) 형태로 시스템 업로드

○ 첨부 서류별로 각각 스캔 업로드 필수 (예시파일명: 1.연구개발계획서_(제출기관명))

번호	서류명	서식	비고
1 (필수)	연구개발계획서	서식 1호	주관기관 제출
2 (필수)	수행기관 대표의 참여의사 확인서	서식 2호	모든 기관이 공통 날인하여 제출
3 (필수)	사업자등록증	-	모든 기관 제출
4 (필수)	법인등기부등본 ※ 신청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분	-	모든 기관 제출
5 (필수)	수행기관 의무이행 서약서 ※ 신청과제 중복성 검토 등	서식 3호	모든 기관이 공통 날인하여 제출
6 (필수)	신청자격 적정성 확인서	서식 4호	모든 기관 각각 작성하여 제출
7 (필수)	표준재무제표 또는 회계감사보고서 ※ 표준재무제표의 경우 국세청 흡수 분	-	최근 3개년도(21 ~ '23)(비영리기관 제외)
8 (필수)	국세 및 지방세 완납 증명서 ※ 신청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분	-	최근년도기준, 모든 기관 제출(비영리기관 제외)
9	기술사업화 전문기관 증명서류(원본대조필)	-	해당기관/기술거래기관 지정서, 사업화전문회사 지정서, 전문연구사업자 신고증(연구관리업종) 등)
10	사업수행실적 증빙서류(실적증명서 등)	서식 5호	해당 시 모든 기관 제출 (최근 3개년, 최대 5개 이내)
11	연구개발기관의 연구개발비 사용신청서	서식 6호	해당 시 제출
12 (필수)	국가연구개발사업 동시수행과제 수준수 확 인서	서식 7호	모든 기관 각각 작성하여 제출
13 (필수)	참여연구원 정보	서식 8호	엑셀 양식에, 과제참여인력(주관/공동) 정보 기입 후 제출
14 (필수)	연구책임자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 현황	서식 9호	주관 기관 제출
15 (필수)	개인정보 및 과세정보 동의서 ※ 모든 참여연구원 날인	서식 10호	모든 기관 제출
16 (필수)	연구윤리 · 청렴 및 보안서약서 ※ 모든 참여연구원 날인	서식 11호	모든 기관 제출

신청 시 주의사항

- **전산 등록기간 마감일에는 접속 폭주로 인한 접수지연 및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접수 요망함**
- 연구책임자가 온라인에 접속하여 접수마감일 15시까지 모든 과제 정보(신청항목)를 전산에 입력하고 제출 서류 업로드를 완료하여 **제출완료** 상태인 연구개발계획서(과제)만 접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. 전산 정보 입력 및 서류 업로드 시 상당 시간 소요될 수 있으며 기한 내에 제출되지 않은 과제는 미접수 처리됨.
- 전산 등록 시,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연구책임자가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에 로그인하여 전산 등록
- 연구개발계획서 등의 전자파일은 반드시 신청서상의 내용과 일치하도록 정확하게 작성 후 사업관리 시스템에 등록 제출
※ 연구개발계획서의 기재사항 허위 작성 시 탈락 또는 협약해약 등 불이익의 조치함
- 제출서류 중 필수서류를 전산접수하지 않은 경우 해당 과제는 사전지원제외 처리됨
- 모든 제출서류는 Windows 운영 체제를 사용하여 확인하며, 해당 운영 체제를 통해 확인 가능하도록 시스템 업로드 권장

문의처(담당부서) :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전북연구개발특구본부 기술사업화팀

○ 담당자 : 이진광 연구원(ljk4002@innopolis.or.kr/063-905-9754)

6. 기타사항

- 신청서 및 구비서류의 미비한 사항에 대하여 연구책임자 연락처(사무실, 휴대전화, 이메일 등)로 요청할 수 있으며, 수정 및 보완 요청한 기한 내에 응하여야 함
- 사업비 및 사업기간 등은 평가결과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
-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,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선정을 취소할 수 있음
- 본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동 사업 지침·기준 및 안내자료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, 지침·기준 등을 미숙지하여 발생하는 불이익 및 그에 따른 책임은 본 사업을 신청한 기업 및 수행기관에게 있음
- 선정된 자가 공고문 및 관련 규정 등에 위배되거나, 사업 신청서의 내용을 허위 기재·누락한 경우 선정 취소, 정부 사업 참여제한 및 사업 지원금 환수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음
- 사업선정 시 정량지표 및 사업계획 관련 세부내용은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과 협의 하여 조정될 수 있음
-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(IRIS)을 통한 연구개발과제 접수 전 필요 이행 사항, 관련 매뉴얼 미숙지에 따라 접수기한 내 최종제출되지 않은 과제는 미접수 처리됨